

 **BLUESQUARE**

대 관 규 약

대 관 규 약

제정일 : 2011년 09월 04일

1차 개정일 : 2016년 05월 27일

2차 개정일 : 2017년 10월 19일

3차 개정일 : 2022년 01월 01일

■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약은 (주)인터파크씨어터(이하 인터파크씨어터)가 운영하는 블루스퀘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4)내 신한카드홀, 마스터카드홀 및 부대 시설의 운영 관리 및 대관에 대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대관자"라 함은 이 내규를 인정하고 인터파크씨어터와 대관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3) 대관의 범위는 블루스퀘어의 공연을 위한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의 사용을 포함한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 (1) 대관의 종류는 대관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준비대관(준비, 철수, 철야대관)으로 구분한다.
- (2)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에 인터파크씨어터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을 받아 승인, 확정한다. 단, 인터파크씨어터가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외의 공연도 신청, 승인할 수 있으며 본 항의 경우 인터파크씨어터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 (3) 제 2 항의 정기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4)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일정 발생시 가능하다.

■ 대 관 료

제 4 조 대관료 산정

- (1) 대관료는 인터파크씨어터가 정하는 대관료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단, 콘서트 또는 행사에 한해서 (주)인터파크씨어터에 제작대행을 의뢰하거나 1 개월 이상 장기대관을 할 경우 대관료를 할인조정 적용할 수 있다)

제 5 조 대관 계약금 및 잔금 납부

- (1) 사용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계약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기본대관료의 15%를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잔금을 입장권 판매 개시 이전까지 인터파크씨어터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단, 수시대관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7 일 이내 전액 납부)
- (2)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이전에 발생하는 추가대관료는 발생즉시 납부해야 하며, 이후 발생한 대관료는 공연 종료 후 7 일 이내에 납부 정산한다.
- (3) 대관자가 부대설비사용료 및 추가대관료 등을 미납했을 경우 인터파크씨어터는 대관자가 (주)인터파크에 대하여 가지는 티켓판매대금 정산대금 채권에서 해당 미납금을 만족하는 만큼을 대관자에게 양도 받아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권 판매대행금액 정산 시 대관사용료 해당 금액 공제 후 지급한다.
- (4) 주 8 회 이상 장기대관공연의 경우, 매주 월요일은 공연장 휴관일로 정하여 공연을 하지 않고 대관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 (5) 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도 공연 1 회기준 대관료를 납입해야 한다.
- (6) 대관자가 대관료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인터파크씨어터는 대관료 납부를 최고하고 14 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7) 인터파크씨어터는 계약의 이행과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장권 발매일 또는 대관 개시일 90 일 전에 잔금의 범위 내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티켓판매금에 대하여 1 순위 질권설정(제 3 자를 통한 티켓판매의 경우에도 같다)을 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대관료 반환 및 위약금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사 합의 하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한다.
- (2) 인터파크씨어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3) 부대설비 신청 후 사용 7 일 전 취소한 경우 (100% 반환)
- (4)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취소를 신청하고 인터파크씨어터와 대관료 반환에 합의한 경우 대관기간 및 취소시점을 고려하여 납부한 대관료 중 일부를 아래의 비율로 반환한다

<대관취소시점>

○ 15일 이상 정기대관의 경우

- 대관일로부터 270일 이상 전 취소 : 60%

(단, 잔금까지 납부했을 경우 공연기간, 신용도, 임차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대관일로부터 180일~269일 전 이후 취소 : 50%

○ 15일 미만 단기대관 및 대중음악/행사 등의 수시대관의 경우

- 준비대관일로부터 90 일 이상 전 취소 : 50%

(5) 본조 제 4 항과 관련하여 대관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인터파크씨어터가 대관자가 사용하기로 한 기간에 대하여 대체 계약을 체결(재대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 1 급 감염병(이하 '감염병')의 발생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영업장 폐쇄, 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의 발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한다. 단, 대관자가 정부로부터 손실 보상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대관신청 및 승인

제 7 조 대관신청

(1) 대관신청인은 대관 신청 시 '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시설사용신청 등은 소정의 양식으로 같음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② 블루스퀘어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블루스퀘어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③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를 하거나 또는 작품변경을 2 회 이상 한 단체 또는 개인

④ 대관료 미납 또는 체납된 단체 또는 개인

⑤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⑥ 기타 공연의 내용, 수준이 블루스퀘어에서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⑦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청

제 8 조 대관승인

- (1) 인터파크씨어터는 대관신청 접수 후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서면 [대관승인서, 대관불가통지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 (2) 인터파크씨어터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3)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인터파크씨어터와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4) 대관자는 인터파크씨어터가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5) 공연에 필요한 부대설비사용은 대관계약 후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를 스태프회의 직후 인터파크씨어터에 제출해야 한다.

■ 대관승인취소, 변경금지, 공연취소

제 9 조 대관승인취소 및 신청자격제한

-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인터파크씨어터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①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② 인터파크씨어터가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③ 인터파크씨어터가 지정한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대관료 납부를 최고하고 14 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④ 인터파크씨어터의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 ⑤ 상호 협의된 운영 계획 및 안전의무 위반, 인터파크씨어터의 공연장 안전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 ⑥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공연대관 취소의 경우 기납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연에 임박하여 대관취소를 할 경우에는 다음 대관 시 제 7 조에 의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0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인터파크씨어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 11 조 공연내용 변경금지 및 대관취소

- (1) 대관자는 대관신청시 명시한 내용 (공연명, 공연일정, 출연자, 공연내용, 주최자 등)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파크씨어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대관자가 공연준비시작일 전에 대관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취소된 공연일수에 대해 기본대관료의 50%를 적용한다.
- (3) 공연준비기간이 시작된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 대관기간 중 공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관자는 공연대관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 (4) 인터파크씨어터는 대관자가 공연장 또는 부대시설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대관료를 부과한다.
- (5)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6)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 6 조에 의해 처리된다.

제 12 조 공연취소 및 중지

- (1)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자는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2)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인터파크씨어터는 취소된 공연에 대하여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고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는 이외에 상호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 (3) 인터파크씨어터의 책임없이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의한 단전, 단수, 교통통제 또는 요청에 의하여 공연을 진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으로 행정관청이 영업중단 조치를 취했을 경우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인터파크씨어터는 취소중지된 공연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으며 면책된다.

■ 공연장사용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제 13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1) 대관자는 블루스퀘어의 시설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인터파크씨어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 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인터파크씨어터의 기한을 정한 철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철거를 지연할 경우 인터파크씨어터에서 먼저 철거 또는 폐기한 후 대관자가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단, 철거 또는 폐기 과정에서 인터파크씨어터는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물의 손상,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변상하지 않는다.

- (2) 대관자는 운영사의 시설물 철거요청에 즉시 응해야 하며 인터파크씨어터의 철거요청 통지로부터 3 일 이내 즉시 철거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 (3)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공연 종료 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블루스퀘어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되, 특히 무대장치나 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터파크씨어터의 요청 시 대관자는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 외부에서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방염 및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는 필증 등을 인터파크씨어터에 제출하여야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2) 인터파크씨어터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3) 대관자는 인터파크씨어터에서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4)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5) 대관자는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장 부속시설(열쇠, 분장실집기, 비품 등) 파손 시 해당시설의 수리, 원상회복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6) 대관자는 공연장에 화환을 반입하는 경우, 공연 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철거비용 및 환경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7) 인터파크씨어터는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공연과 관련하여 인터파크씨어터의 책임없이 발생할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8) 대관자는 인터파크씨어터가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제 3 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인터파크씨어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9)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리셉션은 인터파크씨어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사용료를 납부한다.
- (10) 대관자는 인터파크씨어터에서 정한 공연자료수집 및 관계기관의 공연자료요청, 인터파크씨어터의 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공연설명 목적으로 공연프로그램(발행시) 100 부, 공연 OST(발매시) 10EA, 공연 DVD(발매시) 10EA 를 발매 후 7 일 이내에 인터파크씨어터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1) 대관자는 공연장에 입점한 운영시설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2)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터파크씨어터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인터파크씨어터의 귀책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계약당사자의 본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몰취되거나 반환된 대관료를 초과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책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초과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입장권발행, 판매 및 매표, 수표관리

제 15 조 입장권 발권

(1) 대관자는 판매대행사인 (주)인터파크를 이용하여 입장권을 발권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인터파크씨어터와 협의할 수 있다.

(2) 신한카드홀 좌석은 총 1,766 석 (고정 1,658 석, OP 76 석, 가족실 14 석, 휠체어석 18 석)으로 공연특성에 따라 사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마스터카드홀 좌석은 총 1,373 석(고정 381 석, 가변 991 석)으로 가변석은 스탠딩석으로 활용 가능하다.

(3) 인터파크씨어터는 공연장운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일부 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 및 사용하며, 일반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① 신한카드홀: 총 30 매

[1 층: 4 열 18 번~27 번(10 매), 11 열 27 번~32 번(6 매), 12 열 18 번~27 번(10 매), 19 열 34 번~37 번(4 매)]

② 마스터카드홀: 총 30 매

지정석: [1 층: B 구역 7 열 5 번~14 번(10 매), 12 열 5 번~20 번(16 매), C 구역 12 열 1 번~4 번(4 매)]

스탠딩석: [A 구역 216 번~225 번 (10 매), B 구역 201 번~210 번 (10 매), 2 층 5 열 22 번~25 번(4 매), 2 층 6 열 27~32 (6 매)]

(4) 대관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행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인터파크씨어터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인터파크씨어터는 공연장 입장을 제한, 거부할 수 있다.

(5) 교환권은 반드시 인터파크씨어터의 사전승인을 받고 (주)인터파크의 전산으로 발권해야 한다.

(6) 대관자는 입장권 판매시 인터파크 회원 및 관계사 회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6 조 입장권 판매 및 매표, 수표관리

(1) "을"은 고객의 편의와 원활한 티켓발권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장에 입점되어 있는 티켓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할 수 있다.

(2) 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인터파크씨어터에서 전담한다.

■ 홍보물, 방송 협의

제 17 조 광고 홍보물 협의

- (1)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블루스퀘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파크씨어터 내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 대관자는 블루스퀘어에 광고, 홍보물을 부착/설치 할 경우 인터파크씨어터가 지정하는 장소에 따라 게첨한다.

제 18 조 방송중계, 판촉

블루스퀘어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인터파크씨어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대해서는 인터파크씨어터와 협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인터파크씨어터는 필요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 공연진행 및 스탭회의

제 19 조 공연진행협조

- (1) 스탭회의
 - ① 대관자는 무대작업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최소 15 일전까지 인터파크씨어터의 주관하에 스탭회의를 해야한다. 스탭회의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는 준비대관시작 2 일전까지 인터파크씨어터 무대기술팀과 사전 협의 해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스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 인터파크씨어터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 (2)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
 - ①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장치 및 장비설치는 기술 검토 후 인터파크씨어터 관리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
 - ② 공연과 관련된 무대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인터파크씨어터 무대감독이 진다.
 - ③ 백스테이지 출입은 인터파크씨어터에서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한 자만 가능하며,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출입 명단을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7 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3) 공연진행
 - ①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1시간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하며, 1회 공연은 150분

을 초과하지 않는다.

- ② 대관자는 인터파크씨어터의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 중 문제발생 시 인터파크씨어터의 무대감독 또는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③ 대관자는 공연개시일 전까지 인터파크씨어터가 요구하는 수량의 (공연당 최소 30부) 포스터와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 ④ 공연진행과 관련한 하우스운영(객석관리, 공연진행, 안전관리 등)은 인터파크씨어터의 하우스매니저가 총괄 운영한다.

■ 부 칙

제 20 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 (1) 본 규약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2) 본 규약은 2011 년도 11 월 이후 공연을 위한 대관계약부터 적용되며, 매년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21 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인터파크씨어터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대관자는 인터파크씨어터가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제 3 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인터파크씨어터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 22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23 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